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흠제 의원 외 23명

나. 의안번호 : 제2966호

다. 제출일자 : 2025. 8. 11.

라. 회부일자 : 2025. 8. 14.

2. 제안사유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민간 공유자전거, 일반 자전거 등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공자전거의 정상적인 대여·반납이 어려워지고, 주차 질서가 훼손되며, 시민의 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현행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는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질서 유지에 관한 행정적 조치

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공공자전거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적 조치, 안내·제도 등 실효성 있는 질서유지 방안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의 질서 유지를 통해 운영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자전거의 대중교통 연계 수단으로서의 역할과 신뢰도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및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를 신설하여 관련 개념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함 (안 제2조제7호 및 제11호 신설)
- 나.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무단 주차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적 조치 근거를 신설하고, 안내판·앱 안내·현장 제도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질서유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12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 다. 시민 대상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에 주차질서 및 무단 주차 예방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시장의 교육 강화 책무를 명시함 (안 제13조제7항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8. 20. ~ 8. 24.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¹⁾

○ 제출의견 : 원안가결

- 민간 공유모빌리티의 공공자전거 대여소 거치로 인한 시민 이용불편 및 안전 저해 우려에 공감하며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함

1) 보행자전거과-12056(2025.8.25.)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자전거 주차구역’과 ‘개인형 이동장치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시장이 공공자전거(일명 ‘따릉이’) 주차구역에 개인형 이동장치와 일반 자전거 등 타 이동수단의 무단 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규정하는 한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시 자전거 주차질서 확립 및 무단 주차 예방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 제2조제7호와 제11호는 “공공자전거 주차구역”과 “개인형 이동장치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에서 공공자전거의 원활한 대여·반납을 위해 필요한 주차공간과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이동수단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동 개정조례안 제12조의2제7항과 제8항은 시장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의 무단주차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해 공공자전거를 제외한 개인형 이동장치, 민간 공유자전거 및 일반자전거

등이 해당 구역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안내판 설치, 현장 계도 등의 질서유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

- '25년 6월말 기준 서울시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은 총 2,780개소, 공공자전거는 총 45,000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대 대여소별 공공자전거 배치 불균형 발생 등으로 보행불편과 공공자전거 이용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총 440개소에 대해 “시민참여 따릉이 재배치 사업²⁾” 추진을 통해 따릉이를 재배치함으로써 주차공간 불균형 및 공공자전거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참여한 시민에게 이용 마일리지를 '23년 7월부터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시장은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에 타 이동수단의 무단

2) 보행자전거과-3860호(2024.9.6) “시민참여 따릉이 재배치 추진계획”

- 대상 대여소 : 총 440개소('25.8월 기준, 총 사업기간 내 3개월마다 재선정)
 - 선정기준 : 전년 동기간 기준 거치대 수 대비 200%이상(과다) 또는 30%이하(과소)
- 참여대상 : 따릉이 회원으로 가입한 시민('25.6월 기준 회원수 495만명)
- 참여방법 : 따릉이앱, 연계 민간업체(티머니Go) 플랫폼에서 직접 참여
- 사업내용 : 출퇴근 시간대(07~09시, 17시~19시) 과다거치 선정 대여소(220개소)에서 대여 시 또는 과소거치 선정 대여소(220개소)에서 반납 시 일정 마일리지 적립
 - 마일리지(100M = 100원 상당) : 1회 100M, 일 최대 400M, 월 최대 5,000M
- 사업실적

구 분	시범사업(티머니Go)		본사업(6월말 기준)
기 간	1차('23.7.~12.)	2차('24.5. ~ 11.)	'25.5.~ 11.(추진중)
실적	총 106,312건 참여 (총 10,632천원 지급)	총 104,833건 참여 (총 10,483천원 지급)	총 110,049건 참여 (총 11,045천원 적립)

※ '25년 본사업 실적은 따릉이 앱 실적만 포함(티머니Go 실적은 11월 사업종료후 포함예정)

주차를 방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내판 설치, 앱 안내 등의 질서유지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한편 동 개정조례안 제13조제7항은 시장이 자전거 주차질서 확립 및 무단 주차 예방을 위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자전거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서울시는 개인형이동장치, 일반 자전거 등은 자전거 보관소 및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민간 사업자의 공유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거나 서울시와 자치구가 확보·제공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³⁾을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개인형이동장치 주차구역 현황

(’25.7월 기준)

구분	합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개소	329	17	4	4	6	1	14	1	4	8	3	39	2	1	22	4	28	3	18	3	5	49	59	29	5

※ 영등포구 미운영